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PROSECUTION SERVICE	**대전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인권감독관 전미화 전화 042-470-4041 / 팩스 042-470-4240	**보 도 자 료** 2020. 6. 30.(화)

제 목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대전지검 형사조정위원회**

- **대전지검 형사조정위원회**는 노무사, 세무사, 변호사, 가정폭력상담사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이 전문분과(일반형사, 여성·청소년, 건설노동)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
- 2020. 2.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형사조정업무가 중단된 상황에서도, 신속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조정불성립 사건 중 숙려기간을 부여했던 사건에 대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합의점 도출을 시도하고, 피해회복조건으로 조정 성립된 사건에 대한 조건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였음
- 또한 생업과 육아로 일과시간 중 출석이 곤란한 당사자들을 위해 매주 수요일 야간조정을 실시하고, 당사자가 조정시간을 선택하는 선택시간제를 도입하는 등 형사조정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시행하여 당사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형사조정 성립률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음
- 대전지검 형사조정위원회는 앞으로도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한정된 수사 인력과 자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회복적 사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음

1 대전지검 형사조정위원회 운영현황

- **대전지검 형사조정위원회**는 2007. 6. 발족 이후 세무사, 노무사, 변호사, 가정폭력상담사 등 각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일반형사, 여성·청소년, 건설·노동 3개 분과, 56명의 위원으로 구성됨

- 2019년 1월부터 조정불성립 사건에 대하여 숙려기간 부여 후 다시 합의를 시도하는 집중관리제도(조정속행제도), 야간조정 등 조정활성화 방안을 시행하여 기존의 저조하던 조정실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2019년도 형사조정 우수청으로 선정되었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조정업무가 중단된 2020년 2월까지의 누적 조정성립률 66.4%로 비교청 1위의 실적을 올리고 있음

- 또한 56명의 조정위원들은 대검에서 실시하는 형사조정위원 전문화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정기법 및 법 지식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2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조정업무 공백 최소화

- 2020. 2. 코로나19 확산으로 형사조정업무가 전면 중단된 상황에서도, 신속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유선전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코로나19의 감염우려를 차단한 상태에서 숙려기간을 부여한 집중관리사건에 대한 합의점 도출을 시도하고, 조건부 조정사건 사후관리, 신규 조정의뢰 사건에 대한 민원응대 등 업무를 수행하였음

- 2020. 2. 이전 1회 조정기일에서 조정불성립된 사건 중 숙려기간을 부여하면 조정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집중관리사건으로 선정하여, 유선전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당사자 쌍방의 의견을 듣고 조정조건을 조율하는 등 끈질긴 노력으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도모하였음

※ 형사조정업무가 전면 중단된 2020. 2. 24.부터 2020. 5.까지 긴급한 피해회복이 필요한 집중관리사건 22건에 대하여 합의 시도하여, 12건 조정성립

- 또한 피해회복을 조건으로 조정 성립된 사건에 대한 조정조건 이행여부 점검하고, 신규 조정의뢰사건에 대한 민원응대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형사조정업무 공백을 최소화하였음

3 당사자의 불편해소를 위한 다양한 제도 시행

- 대전지검 형사조정위원회는 생업, 육아 등의 이유로 일과시간 중 출석이 곤란한 당사자를 위해 매주 수요일 18:00~20:00 야간조정을 실시하여 당사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음

- 또한 원거리에 거주하거나 휴가 사용이 제한되는 직장인들을 위해 당사자가 조정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시간제를 운영하여 직장인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음

- 숙려기간을 부여하는 집중관리 대상사건으로 선정된 사건들은 전문성을 갖춘 형사조정위원에게 배당하여, 꾸준한 설득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여, 당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형사사건의 종국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집중관리 대상사건의 경우, 형사조정위원에게 추가 조정수당이 지급되지 않음에도, 2019년 집중관리 대상사건의 경우 81.4%의 조정성립율(338건 선정, 275건 성립)을 보이고 있음

4 당사자 모두가 웃을 수 있었던 회복적 조정사례

- 종합보험 미가입 차량에 의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1차 조정 실패 후 코로나19 확산으로 더 이상의 조정이 진행되지 못해 피해자가 치료비 문제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담당 형사조정위원이 피해자에게 자차보험으로 우선 보상받은 후 보험사가 피의자에게 구상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극도의 빈곤상태에 있는 피의자의 사정을 전달하여,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지급받은 피해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준 사례

- 초등학생이 수영장에서 다이빙 놀이를 하던 중 머리를 다친 업무상 과실치상사건에서 1회 조정기일에 첨예한 감정 다툼으로 합의점이 없어보였으나, 집중관리 대상사건으로 선정, 담당 형사조정위원의 꾸준한 설득 끝에 피의자가 자필사과문을 보내며 합의금을 제시하였고, 이에 마음이 움직인 피해자의 부모가 더 적은 금액만 받고 합의를 한 사례

- 친형제간 다툼으로 쌍방 전치 6주 상당의 중한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조정위원들이 장기간 계속된 형제간의 갈등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듣고 공감하며 서로의 마음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여, 형제간에 서로 사과하고 조건 없이 합의에 이르게 한 사례

- 대중교통 이용과정에서 사소한 갈등으로 폭행으로 입건되어 조정 의뢰된 사건에서, 조정위원들이 당사자를 분리하여 각자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며 공감해 주어, 조정종료 후 서로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한 당사자들이 의형제를 맺기로 약속한 사례

5 향후계획

- 대전지검 형사조정위원회는 앞으로도 처벌 내지 응보적 사법 위주가 아닌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피의자의 장기간에 걸친 형사절차 진행 부담 해소를 통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회복적 사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음. 끝.